

새도약기금, 농협자산관리회사·상호금융권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 농협자산관리회사·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대부회사·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 (9,602억 원, 11.6만 명)

1

주요내용

'26.5.29.(금)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이하 '농자산'),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대부회사·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1.6만 명이 보유한 약 9,602억 원이다.

- ※ (1차 매입, '25.10.30.) 한국자산관리공사(3.7조 원, 22.9만 명), 국민행복기금(1.7조 원, 11.1만 명)
- (2차 매입, '25.11.27.)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0.8조 원, 7.6만 명)
- (3차 매입, '25.12.23.) 여전업, 손해보험,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1.5조 원, 18.0만 명)
- (4차 매입, '26.2.26.) 지역신용보증재단(16개),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0.4조 원, 4.7만 명)

< 새도약기금 5차 매입 현황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공 공	(4개 사*)	590억 원	0.3만 명
대 부	(14개 사)	1,794억 원	3.6만 명
새마을금고	(528개 사)	347억 원	0.5만 명
수 협	(71개 사)	344억 원	0.3만 명
신 협	(302개 사)	332억 원	0.4만 명
산림조합	(9개 사)	3억 원	19명
카 드	(1개 사)	575억 원	0.7만 명
기 타(농자산)	(1개 사)	5,617억 원	5.8만 명
합 계	(930개 사)	9,602억 원	11.6만 명

*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히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8.13일 예정) 이후인 '26.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1조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75만 명(중복 포함)이다.

< 새도약기금 업권별 매입 현황 (1~5차 누적)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공 공	(26개 사)	59,117억 원	35.3만 명
은 행	(17개 사)	5,417억 원	3.7만 명
생명보험	(10개 사)	535억 원	0.7만 명
손해보험	(5개 사)	1,130억 원	1.0만 명
카 드	(8개 사)	8,473억 원	10.3만 명
캐피탈	(21개 사)	2,592억 원	5.1만 명
저축은행	(47개 사)	723억 원	1.7만 명
새마을금고	(740개 사)	572억 원	0.8만 명
수 협	(71개 사)	344억 원	0.3만 명
신 협	(302개 사)	332억 원	0.4만 명
산림조합	(63개 사)	22억 원	149명
대 부	(24개 사)	6,354억 원	9.9만 명
기 타(AMC 등)	(2개 사)	5,621억 원	5.8만 명
합 계	(1,336개 사)	91,232억 원	75만 명

새도약기금은 6월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이하 ‘상록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대상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15개사이다. 대부업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대부회사들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 관련 문의 >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오유정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조의열 (02-2100-2838)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운영처	책임자	처 장	이해진 (051-794-3040)
		담당자	팀 장	김도근 (051-794-3064)